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0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17.
3. 회 부 일 : 2025. 10. 2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하여(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RE100 설비 확대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1)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7조(보급사업) ① -----<br>-----<br>-----<br>-----<br>-----.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신설>                                                                                                |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                                                                                                                      |
|---------------------------------------|----------------------------------------------------------------------------------------------------------------------|
| <p>3. · 5. (생략)</p> <p>② · ③ (생략)</p> | <p><u>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br/>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br/>설비의 설치 사업</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현행법 제27조<sup>2)</sup>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sup>3)</sup>’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sup>4)</sup>’([참고])을 운영 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실용화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만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3)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건물, 지역(융복합)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개인, 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자가용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함. 2026년 예산은 약 2143억 원 규모이며, 사업유형(주택, 건물, 융복합 등)에 따라 구분하여 태양광, 지열 등 주요 에너지원 별로 정액 또는 정률 방식으로 지원함. 설비유형에 따라 총설치비의 40~50%를 지원함.
- 4) 금융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설치하는 기업이나 RE100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용자를 지원함. 2026년 예산은 6,480억 원으로, 풍력, 태양광 등 분야별로 시설자금, 생산자금 등을 지원하며, 기업 유형(개인·중소기업·RE100 대기업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40~85%를 지원함.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의 지원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과 예산 편성 시 법적 근거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향후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와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실제로 충남 예산 내포농생명융복합클러스터, 경기 화성 H-테크노밸리, 전남 해남 솔라시도 등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RE100 등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적 요구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필요성에 동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신규 산업단지 및 특구 조성 시

RE100 이행계획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914호, 김교홍의원 대표발의)<sup>5)</sup> 및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922호,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이 함께 발의되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33 |

---

5)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제66조의2제1항 신설),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지원하려는 내용임.

## 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 사업개요

- (내용) 신재생e 생산·발전시설 및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06~계속)

\*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3년물 국고채 대표금리 - 1.25%p, '24.2Q 2.0%)

- (추진체계) 회계 전력기금, 시행방법 융자, 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근거: 「전기사업법」 제49조,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지원규정」 제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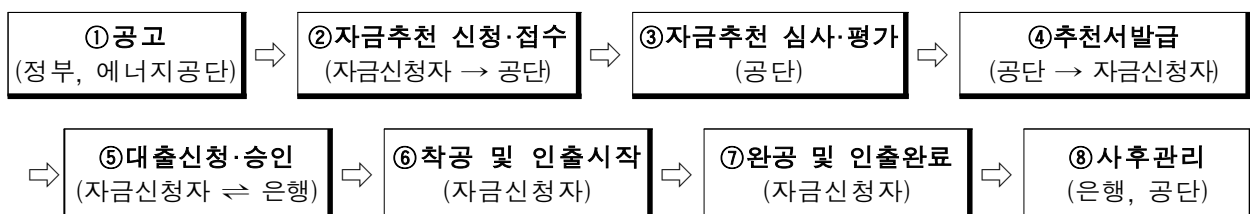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
- (지원내용) 용도에 따라 ①시설자금, ②생산자금, ③운전자금으로 구분

#### < 자금용도별 예산 및 지원내용 >

| 자금 용도    |         | 지원내용                                                                             | 사업자당<br>지원한도 | 총사업비 대비<br>지원비율 한도                                                           |  |
|----------|---------|----------------------------------------------------------------------------------|--------------|------------------------------------------------------------------------------|--|
| 시설<br>자금 | 풍력 분야   | 발전설비 설치 자금(발전소 등)<br><br>- 태양광분야 지원대상<br>(상시) RE100, 마을태양광<br>(정기) 산업시설·도심·농어촌지역 | 500억원        | • 개 인 · 협 동 조 합 ,<br>중소기업 : 80%<br><br>• 중견기업 : 60%<br><br>• RE100 대기업 : 40% |  |
|          | 태양광 분야  |                                                                                  | 300억원        |                                                                              |  |
|          | 바이오 분야  |                                                                                  | 100억원        |                                                                              |  |
|          | 기타 에너지원 |                                                                                  | 100억원        |                                                                              |  |
| 생산 자금    |         | 발전설비 생산시설                                                                        | 300억원        |                                                                              |  |
|          | 바이오 분야  | 설치에 필요한 자금                                                                       | 100억원        |                                                                              |  |
| 운전자금     |         | 발전설비 생산 중소기업<br>사업 운영 자금                                                         | 10억원         |                                                                              |  |

### □ 사업절차



## 2.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 사업개요

- (내용)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추진체계) 회계 전력기금, 시행방법 보조, 출연 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대전광역시
-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보급사업)

###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 건물 및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제조·설치기업, 민간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내용) 대상에 따라 ①주택지원, ②건물지원, ③융복합지원으로 구분

#### < 사업별 지원내용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           | 주요 내용                                                    | '26예산   | 지원비율                                             |
|------|-----------|----------------------------------------------------------|---------|--------------------------------------------------|
| 보조   | 주택지원      | 단독,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 일부 지원                       | 25,665  | 에너지원별 정액 지원<br>- 태양광 : 40% 이내<br>- 비태양광 : 50% 이내 |
|      | 건물지원      | 건물 등에 설치 지원, 신재생 설비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 45,867  |                                                  |
|      | 융복합지원     | 에너지원간 융합 지원, 특정지역 내 주택, 공공·상업 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복합 지원 | 128,980 | 컨소시엄별 총사업비의 50% 이내                               |
|      | 세계태양광총회   |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개최 지원 (25년 사전행사, 26년 본행사)                    | 1,450   | 30%                                              |
| 출연   | 사후관리      | 고장접수지원센터 및 A/S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 3,490   | 100%                                             |
|      | 원스톱서비스플랫폼 | 발전사업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풍력발전 합동지원단 운영                    | 4,603   |                                                  |
|      | 공공주도산단태양광 | 공장 지붕 등 태양광 설치 검토 단계의 애로사항을 해소(컨설팅)하고 유휴부지 등을 발굴         | 4,277   |                                                  |
| 합 계  |           | -                                                        | 214,332 | -                                                |

\* 에너지원별로 총 설치비의 40~80%를 보조(BIPV 70%, 시범보급·성능검사 80%)

### □ 사업절차

